

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

◎ 환경부공고 제2013-290호

「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일
환경부장관

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제안 이유

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(법률 제11463호, 2012.6.1 공포, 2013.6.2 시행)됨에 따라 샘물보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샘물보전구역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(안 제2조의3, 제2조의4, 제2조의5)
-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, 고시

내용 및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

나. 샘물보전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규정(안 제2조의6)

- 샘물보전구역 내에서는 오염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나,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샘물보전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

◎ 환경부공고 제2013-312호

「환경분쟁 조정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6월 11일
환경부장관

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실내공간의 공기오염 및 지하수 장애를 분쟁조정 대상 환경피해 범주에 포함하여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,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지원을 할



수 있도록 하며, 당사자 합의 하에 중재위원을 직접 선정하고,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중재 제도를 도입하며, 환경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환경분쟁조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환경피해의 범위 확대(안 제2조)

- 1)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오염과 지하수 수위저하 및 오염 등의 지하수 장애를 환경피해의 구제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.
- 2) 실내공간의 공기오염 및 지하수의 수위저하, 수질오염 등 지하수 장애를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의 범주에 포함함.

나.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단독 사건도 분쟁조정 사무로 포함(안 제5조제1호)

- 1)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분쟁은 소음·진동, 먼지 등의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분쟁조정 사무로 인정하고 있어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단독 분쟁은 소송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쟁조정사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.
- 2) 건축물의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분쟁을 분쟁조정사무에 포함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

게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.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 확대(안 제7조)

- 1) 환경분쟁 사건이 점점 복잡·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조정위원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- 2) 위원회 구성위원 정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분쟁사건에 관하여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

라.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하여 규정하며, 대도시 안에서의 과태료를 대도시의 장이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, 제8조제3항, 제66조제3항)

- 1) 시·도가 처리하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, 위원의 임명, 과태료 부과·징수의 3개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(‘10.12.14.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사항)

마.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 도입(안 제5조, 제13조, 제45조의2)

- 1) 위원회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구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.
- 2) 환경피해 가해자가 배상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시

환경법 개정법률안 모음

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.

- 3) 소송지원으로 위원회 재정결정에 대한 법원 인용률 제고로 재정결정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구제 기능 활성화에 기여함.

바.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후견인제도 도입(안 제9조)

- 1)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(법률 제10429호)의 시행으로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후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.

사. 시·도지사 등에게 직권조정 요청 권한 부여(안 제30조)

- 1) 환경시설 설치 다툼 등에 대해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직권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직권조정 대상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직권조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.
- 2)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중앙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환경분쟁을 해결하고 직권조정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아.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중재 추가 도입(안 제45조의3, 제45조의4, 제45조의5, 제45조의6 등)

- 1) 조정신청 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조정 중단 또는 소제기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성공적인 조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성 합의를 유도하는 중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.

- 2) 당사자 합의하에 당사자들이 직접 중재위원을 선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는 중재제도를 도입하고자 함.

- 3) 중재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이 불필요하고 당사자 합의로 절차가 개시되며 단심으로 끝나 중재 결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 등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경제성에 기여함.

자. 환경분쟁조정협회 설립 근거 마련(안 제64조의2)

- 1) 위원회의 업무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업무에 치중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제도 개선연구 등에 한계가 있으며,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.

- 2) 환경분쟁조정협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·개발,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경분쟁의 예방은 물론 환경분쟁을 신속·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 ㉠